

유형접객업소 근로감독 강화

7월부터 18세미만 접대부고용 술집등 고발

앞으로 음식점·다방·술집 등 유형접객업소에 대한 근로감독이 크게 강화된다.

노동부는 16일 '유형업소 여성·연소근로자 특별보호대책'을 마련, 지금까지 제조업 위주로 실시해 온 정규 근로감독을 유형서비스업에까지 확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여성과 연

소근로자의 야간 근로금지(제56조)와 미성년자의 술자리접객행위금지(제51조)에 대한 감시·감독을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집중 실시하기로 했다.

노동부의 이런 방침은 소비서비스업이 지나치게 팽창해 제조업체 노동자가 서비스업체로 대거 몰려 생산직 인력난이 가중됨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

를 통해 산업현장으로의 인력 유입이 이뤄지도록 하기위한것이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경찰서·세무서 등 관계기관과 협조, 2월까지 서울·부산·대구 등 6대 도시의 해당사업장 명단을 파악, 이를 근거로 7월부터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근로감독을 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집중단속 기간에

는 현재 각 시·도 주관 아래 실시하고 있는 유형업소 심야단속에 근로감독관을 함께 투입, 자정이 넘어도 여성과 미성년 종업원을 퇴근시키지 않은 업주를 의법처리할 방침이다.

이 경우 적발된 업주는 기존법

규에 따른 행정처벌 외에도 근로기준법 위반혐의가 적용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또 근로감독을 통해 룸살롱·룸카페·요정 등 술집에서 18세 미만 접대부를 고용했는지 여부도 집중적으로 가려내 해당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위장’ 심야영업 여전

서울시 일제단속 위반업소 3백4곳 적발

시 당국의 유형업소에 대한 꾸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성적인 심야·퇴폐영업과 무허가업소의 변태영업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21·22일 이들 동안 본청 3개 기동반과 각 구청 단속반 등 연인원 2천7백명이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서터를 내리고 호객꾼을 동원해 위장 심야영업을 한 술집 등 위반업소 3

백4곳을 적발했다. 이를 업종별로 보면 유형업소 28곳, 대중음식점 2백34곳, 다방·이발소 22곳, 전자오락실 등 기타 20곳 등이다.

특히 대중음식점 허가를 받고도 술을 주로 파는 변태영업이 성행한 서초구 방배동 카페골목에서는 허가가 취소된 뒤에도 계속 영업을 해 온 점프·주말여행·예진·야간비행 등 13곳을 22일 밤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유형업소 가운데 퇴폐·호객행위 등을 한 1백83곳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영업정지 기간에 계속 영업을 한 13곳은 허가가 취소됐으며 무허가 영업을 한 40곳은 고발됐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본청 및 구청 단속반을 날마다 1천명씩 동원,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관계당국의 협조를 얻어

‘퇴폐’이발소 무조건 영업정지

서울시 적발땀 1차경고없이 한달까지

서울시는 퇴폐이발소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음에 따라 위반업소에 대한 처벌을 강화, 영업시간을 어기거나 퇴폐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 1차경고 없이 15일~1달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시는 또 시내 이발소 6천6백63곳을 모범·자율·지도업소로 나눠 지난 1년간 위반사실이 없는 곳은 위생감시를 면제하고 적발사실이 있는 지도업소는 수시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91.3.26